

AY.b.2

군대내 사망사고의 문제점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일시: 2000년 6월 23일

장소: 가톨릭 회관 7층 강당

천주교인권위원회

군대내 사망사고의 문제점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공청회 순서

1. 인사말	2쪽
2. 이 날의 글	4쪽
(주요 내용)	10쪽
3. 발	15쪽
(주요 내용)	18쪽
4. 결	21쪽
(주요 내용)	25쪽
5. 인사말	27쪽
6. 일시: 2000년 6월 23일	주요 내용
7. 장소: 가톨릭 회관 7층 강당	주요 내용

천주교인권위원회

군대내 사망사고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일시: 2000년 6월23일(금) 오후 2시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당

순서

사회	곽한왕 (천주교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개회사	김형태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
발제1	군대내 사망사고의 현황과 문제점 강민구 (송석찬 의원 보좌관)
발제2	군대내 사망사고 처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이덕우 변호사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
토론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단체 연대회의, 새사회 연대, 천주교 인권위원회
질의·응답	
자유토론	

군대내 사망사고의 현황과 문제점	
1. 발제문	2쪽
2. 여는 글	4쪽
3. 발제문 1	5쪽
4. 발제문 2	21쪽
5. 사고사례	27쪽
6. 질의·응답	37쪽
7. 자유토론	47쪽
총 계	1379 (820) 29 33 72 115 8 290 520 471 10 1 18

여는 글

나라를 지키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는 6월입니다. 해마다 6월이면 국립묘지에는 참배행렬이 이어지지만 또 하나 잊혀져선 안 되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꽃다운 젊은 시절, 군에 갔다가 어이없이 한줌의 재로 가족에게 건네어진 젊은이들과 아들의 죽음이 한이 되어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수많은 유가족의 고통!

깊은 절망과 슬픔 속에서 아들 죽음의 진상이 밝혀지길 고대하지만 군의 허술한 수사와 거대한 국가조직 앞에서 또 한번의 고통과 절망감으로 어찌지 못하는 한만이 가슴에 쌓여갑니다.

군에서의 의문의 죽음은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군은 한해에 300여명의 젊은이가 각종 사고로 사망하며, 이중에서 1/3에 이르는 100여명의 젊은이가 자살한다고 발표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가족은 군의 발표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수사의 허술함과 모든 책임을 사망자에게 전가시키는 군의 떳떳하지 못한 모습은 이러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그 동안 군대내 사망사고의 조사활동과 진상규명 활동을 통하여 군대내 사망사고 처리에 대한 제도 개선이 절실함을 느꼈습니다.

군대내 사망사고는 특정인만의 일이 아니며 징병제속에서는 우리 모두의 일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공청회가 의문사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총, 방보, 방위, 군대내 사망사고의 현황과 문제점

발제1. 강민구 (국회의원 보좌관)

1. 개요

군대문화의 폭력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한 과거 군사정권하의 구조적 모순으로부터 출발한 군 의문사문제는 강제징집, 녹화사업(프락치 공작) 등 과거 군사정권의 억압 속에서 자행된 비민주성과 폭력성 등 사회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2. 군 사망사건·사고 현황

가. 군사망자 현황

<'95 ~ '99. 8. 31. 최근 5년간 군 사망자 현황> 국방부 (99. 9)

구분	계	안전사고								군기사고				
		소 계	차 량	항 공	폭 발	추 락	의 사	화 재	기 타	소 계	자 살	총 기	폭 행	기 타
'95	330	222	138	9	4	20	24	3	24	108	100		3	5
'96	359	243	100	2	5	19	23	2	92	116	103	7	3	3
'97	273	173	83	9	11	12	21		37	100	92	2	3	3
'98	248	136	43	7	12	9	31	1	33	112	102	2	5	3
'99.8.31현재	169	85	42	2	1	12	14		14	84	74	2	3	5
총 계	1,379	859	406	29	33	72	113	6	200	520	471	13	17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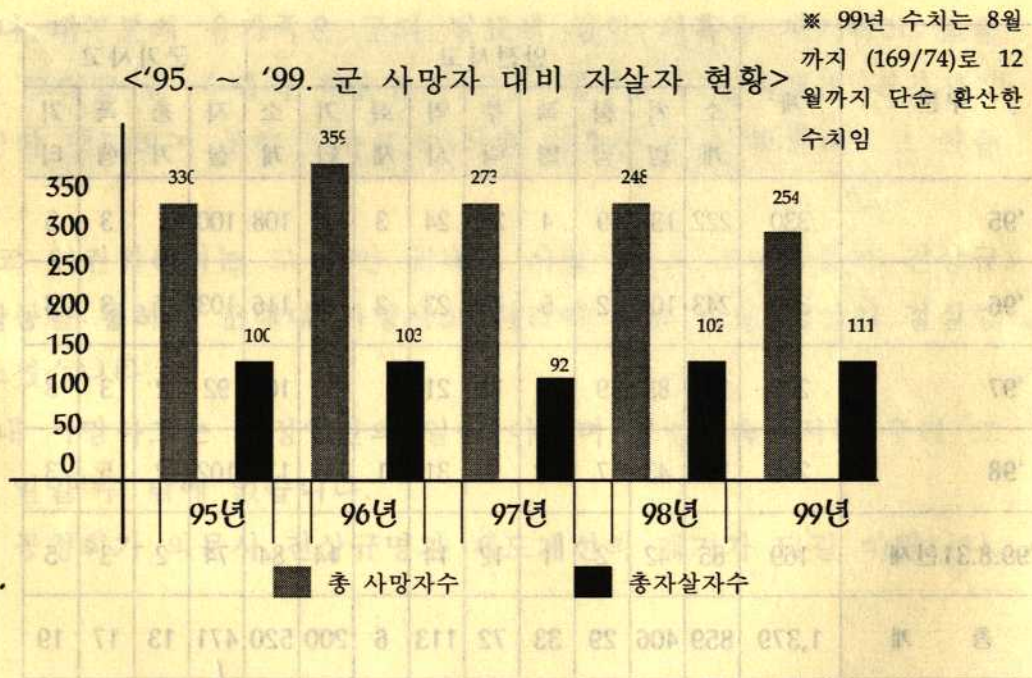
↓
34%

- '95. 1 ~ '99. 8 최근 5년간 군 사망사고의 국방부 자료를 보면, 총 1,379명으로 해마다 300여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98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음

- 하지만 자살·폭행 등 군기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 최근 5년간 총 520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해마다 1백여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근절대책 수립이 절실히 되고 있음

- 특히 자살·추락사망의 경우 사고원인이 불분명한 경우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망원인의 직접적인 동기가 대체로 밝혀지지 않고 있어서 유가족들의 진상규명 요구가 거세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나. 군 사망자 중 자살자 현황



- 유가협·전군협 등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의하면, 사망현장의 의도적인 조작이나 증거인멸이 이루어진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자살'로 처리된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원인규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5년간 군 사망자 1,379명 중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471명으로 34.2%를 차지하고 있고, 앞서 지적한대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대책마련이 절실히 되고 있음

- 따라서 자살 등 군 사망은 직접적으로 전력손실을 의미하며, 간접적으로는 군의 신뢰성 상실로 작용되므로 복무여건 개선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3. 군 의문사 현황

가. 국방부 - 시민단체의 의문사 주장 차이

구분	의문사에 대한 입장	의문사 현황	비고
국방부	사망사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뿐 기본적으로 의문사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	-	98. 12. 9. 국방부내 「민원 제기 사망사고 특별조사단」이 구성되어, 99. 8. 현재 131명의 의문사 민원접수를 받고 있는 실정임
전군협	98년도에 구성되어 군의문사 문제를 강력히 제기해옴	90명	
유가협	86년 창립이후부터 의문사 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해옴	21명	
기타		81명	유가족의 개별적인 의혹제기

<국방부·시민단체 주장 의문사현황>

- 각 시민단체등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군 의문사는 200여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임

- 시민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개별적인 차원에서 의혹제기를 해온 유가족들의 경우, 국방부 등의 단체행동에 대한 거부감 등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초래된 것으로서 98년 2월 김훈 중위 사건 발생이후부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음

- 현재 의문사에 대한 국방부·전군협·유가협 등의 입장 차이가 상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데이터가 부재한 관계로 위 표에서는 각각의 주장을 기재하였음

나. 국방부 의문사 특별조사단의 활동 현황

<99. 2. 1 ~ 8. 31. 군 의문사 특별조사단 민원접수 현황>

구분	계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인원(명)	131	4	107	11	9

- 자료 : 국방부 (99. 9.)

- 98. 12. 9. 국방부 민원제기 사망사고 특별조사단이 발족되어, 99. 2. 1.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한 이 조사단은 99. 8. 현재 131건의 민원을 접수받아 조사활동을 펼치고 있음

<민원제기자의 사망당시 국방부 처리 사고 유형별 현황>

구분	계	의사	총기 자살	수류탄 자폭사	투신 자살	익사	폭발사	교통 사고	실족사	산사태	기타
계	131	23	48	9	5	11	4	4	4	5	18

- 자료: 국방부(99.9)

<사망자의 유형별 그래프>



- 민원 제기자의 사망당시 국방부가 처리한 유형별 현황을 보면, 의사·총기자살·수류탄자폭사·투신자살 등 자살판정이 93건이나 돼 총 민원건수의 7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 외에 교통사고 4건, 실족사 4건 등으로 나타나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이와 관련 민원접수자 131건은 자살 93명, 변사 16명, 일반사망 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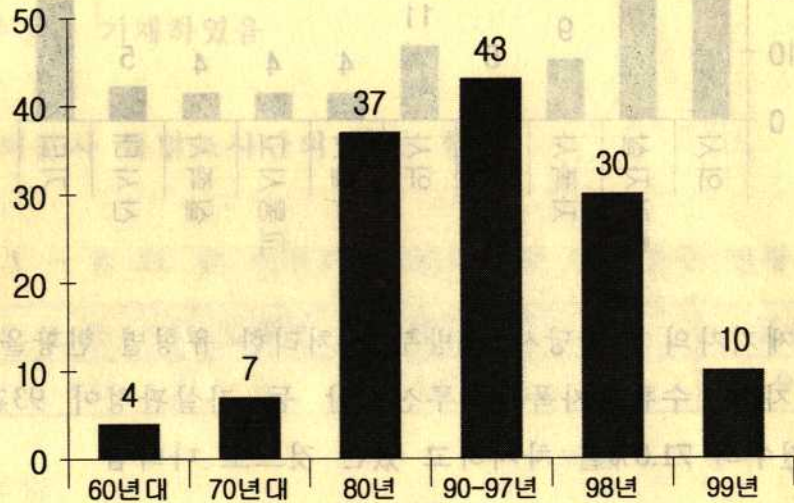
등으로 국방부가 최종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순직처리자의 경우도 15명이나 되는데 이는 사고원인이 불분명해 진상규명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남.

< 민원제기자의 연대별 사망 현황 >

구분	계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97년	98년	99년
계	131	4	7	37	43	30	10

-자료: 국방부(99.9)

< 사망자의 연대별 그래프 >



- 민원 제기된 사망자의 연대별 현황을 보면, 90년대가 43명으로 80년대 37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유가협이 주장하는 의문사 21건(대부분이 80년대)은 민원제기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전군협이 주장하는 의문사 90건중 50여건만을 민원 제기한 상황을 고려해 보면 80년대 군사정권시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여짐

- 98·99년 사망자의 경우도 40여건이나 되고 있어서 의혹해소 차원의 사인규명에 대한 군의 실질적 개선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남다. 국방부 의문사 특조단의 활동한계

- 유가협의 경우 88년도부터 선도적으로 군의문사문제의 진상규명을 요구해왔지만, 그 동안 군에 대한 신뢰성 상실과 태생적 한계를 직시하고 국방부 특조단에 사망자 민원조차 제기하지 않고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차원에서 추진중

- 또한 전군협의 경우도 국방부 특조단이 나머지 40여건은 차후에 민원을 제기하라는 요청을 받고 의문사로 주장하고 있는 90건중 50건만을 민원 제기했다는 사실을 보아도 국방부 특조단이 의문사의 전면적 의혹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문시되고 있음

- 99.7.5. 국방부의 중간수사 발표를 보면 '아무 것도 밝혀낸 것이 없다'고 말하고, 3.21. 1차 수사발표때 자살로 종결한 13건 역시 재수사 중이라고만 말하였고, 2000년 6월의 2차 발표 역시 의문사가 밝혀지지 않았다.

4. 군의문사 발생의 원인 분석

가. 사회적 원인

- 군사독재정권의 통치

박정희 유신정권에서부터 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을 총칼로 짓누르고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 노태우 정권은 집권하면서부터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쳐야 했다. 이는 정권에서는 대단한 위협이었고 정권안보 차원에서 국민들의 민주화운동의 열망을 무력으로라도 꺾을 수밖에 없었다.

국민들은 정권의 비민주성과 폭력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에 더욱 더 거센 저항의 물결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사회의 분위기는 군이라는 특수한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사병들에 대한 정신교육의 강화를 통해 민주화운동의 정당성을 왜곡 훼손하는 정도를 넘어 민주화운동세력에 대한 적대감 고취로 이어졌고 군 수사기관의 감시는 필연적으로 군 내부의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 학생운동의 반정부 투쟁

학생운동은 총칼로 권력을 탈취한 군사독재정권을 상대로 지속적인 반정부투쟁을 진행하였다. 5월 광주의 진상을 국민들에게 알려내면서 정권의 폭력성을 폭로하고, 독재정권 타도를 구호로 들었다. 또한 공식적으로 강제징집 녹화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학생운동 출신 입영자에 대한 감시와 협조를 요구하는 회유와 협박이 복무기간 내내 일상적으로 진행되었다.

- 강제징집, 녹화사업

공식적으로 국방부와 병무청 그리고 교육부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강제징집 조치는 국방부의 발표만으로도 400여명이나 되었다. 이는 군사독재정권의 가장 강력한 저항세력인 학생운동을 초토화 내지 무력화 시켜야 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강제 징집후 보안대에서 진행된 녹화사업(프락치공작)은 회유와 협박을 통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나. 구조적 원인

- 군대문화의 폭력성

상급자의 구타와 일차레로 대변되는 군대 문화의 폭력성은 군이 창설되고 부터 있어 왔던 고질적인 문제이다. 물론 군내 폭력을 근절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항상적으로 존재하였다. 상급자에 대한 폭력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도록 하였다. 자살의 경우라도 이러한 이유로 인해 발생한 경우도 있다.

-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의 결여

군에서 사망사고를 접하는 경우 언제나 있을 수 있는 문제로 간과하고 있다. 인간의 생명은 그 자체로 소중한 것인데 소모품의 손, 망실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기에 부대 지휘관의 문책의 두려움과 진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단순한 자살로 처리를 해 버리고 만다.

5. 군 의문사의 직접적 발생요인 강제징집 녹화사업

가. 개요

강제징집과 녹화사업(프락치공작)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위해는 상당한 수준에서 병행되었을 것은 자명하다. 특히 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의문의 죽음을 발생할 수 있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그러기에 지금에 와서도 그들의 죽음의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강제징집은 광주학살, 고문살인, 최루탄 남발 등으로 얼룩진 80년대 초 소위 학내에서 문제학생으로 지목된 젊은 대학생들이 병역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무시당한 채 영장도 없이 강제로 군에 끌려간 것을 의미한다. 강제징집관련 전체현황은 부재하지만 88년도 국방부가 발표한 81.11~83.11 2년간 강제징집자 현황을 보면, 총 447명으로서 이 중 429명을 당시 보안사에서 교육대상자로 분류관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강제징집자 중 사망자현황은 공식적으로 나온 것이 없지만 유가협이 경우 정성희(연세대재학 중 강제징집), 김두황(고대 재학 중 강제징집) 등 5명이 강제징집자 중 사망자로 드러나 의문사 진상규명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녹화사업은 82년경부터 특수학적 변동자로 처리돼 강제 징집된 학생들을 순화시킨다는 미명아래 국군보안사령부가 프락치 공작사업

을 자행한 것을 의미한다. 녹화사업을 당한 사람들의 경우 학내활동의 조직상황 및 각 학생들의 성향 자백 강요, 특별휴가라는 명목으로 학내활동을 했던 과나 동아리 친구 등의 동정조사를 강요받는 과정에서 정신적·육체적 고통으로 인해 의문의 죽음을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하다. 녹화사업에 대한 정부측의 공식적인 자료는 부재한 데, 유가협이 경우 한희철(서울대 재학 중 강제징집)등이 녹화사업의 미명아래 사망한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진상규명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국회에서의 문제제기

이들의 죽음이 세상에 처음 알려진 것은 지난 84년 3월 8일,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열린 '제적생과 해직 근로자를 위한 기도회' 석상에서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가 '인권소식'을 통해 6명의 사망학생 명단을 발표하고, 이들의 죽음에 대한 충격을 토로했던 것이다.

그 후 대학생들과 종교, 재야 운동단체들이 강제징집과 녹화사업과정 중의 '의문의 죽음'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국회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84년 3월8일 당시 민한당 소속의 김병오의원이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성균관대 이윤성·최경식의 불법적 입영조치 여부, 강제징집 여부를 질의해 권이혁 당시 문교장관으로부터 80년 5.17이후 데모와 관련 군에 입대한 학생은 모두 465명이라는 답변을 들은바 있으나, 강제징집자 중 사망자 수는 발표되지 않았다.

다. 강제징집 녹화사업 원인규명 절실

강제징집 녹화사업이 과거 군사정권아래에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남용, 이 나라의 젊은이들로 하여금 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만큼 정권유지의 도구로 악용되었다는 비난은 면키 어려울 것이다. 군의 명예와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강제징집 녹화사업의 진상이 국민 앞에 낱알이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문제학생으로 지목되어 강제징집 당한 자들이 인간으로서 감당키 어려웠던 정신적·육체적 상흔도 회복될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6. 군 사망 사건 처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사건 처리의 문제점

의심사 자체를 인정한다는 취향
사망사건 초기 사고 부대 관계자는 물론이고 군 수사당국 또한 아직도 이전의 군대내 사망사고의 대응 방식과 커다란 차이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종결시키려는 조급함과 사망자 본인의 문제로 모든 사고의 원인을 돌리려는 무책임함을 나타내고 있다.

지금까지 발생한 군대내 사망사건을 처리하며 나타난 문제점을 통해 의문사의 문제가 제기 될 수 밖에 없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① 천편일률적인 자살 동기

목이 막혔는데

눈이 땅이 떨어진다.

사흘이 더 지음.

군 수사 당국은 유서가 없고 목격자가 없는 사건일 경우 사인을 '내 성적 성격에 의한 군복무 염증 자살' 또는 '가정 비판 자살'이라는 범주에서 결론 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제는 자살이라는 뚜렷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은 타살의 혐의를 발견할 수 없기에 자살이라고 발표를 한다. 발표 후 조사는 자살이라는 틀에 맞추어 자살을 뒷받침하려는 식으로 전개되는 것 또한 문제이다. 명확한 진상을 밝히려는 의지보다는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한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더욱 짙다.

자살과 타살의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없을 경우 그 원인이 밝혀지거나 최소한 유족이 제기하는 합리적인 의문에 대해서 올바르게 규명이 될 때까지 성실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하고 유족이 요구하는 협조를 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예) 이승삼 - 군 생활에 적응치 못하고 복무염증을 느낀 나머지
충기자살

허원근 - 중대장 전령으로서 중대장의 가혹행위와 군대생활
에 대한 염증

② 사건 현장, 사체의 훼손 및 초동수사의 부실

의문사 사건의 경우 변조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사망 사고를 개인의 문제로 처리해 버리거나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는 의도로밖에 유족들에게는 비추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사고 현장이 제대로 보존되거나 사체 발견 당시 사건이 발생하면 먼저 현장을 보존하고 주변을 살피고 사인에 연관을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단서라도

포착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사고 현장은 유족들이 의문을 제기할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정돈을 해버린다.

예) 이이동 - 사례에 실린 사진을 보면 현장의 총기와 폐탄박스의 위치가 서로 상이함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어떠한 이유로든간에 사고현장을 임의 조작하거나 훼손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박상구 - 음독자살이라고 발표를 하였으나 사체를 소독약으로 닦고 현장을 정돈 해 놓는 등 사망 현장을 임의로 변경하였다.

③ 군 당국의 고압적 자세와 비협조

군대에서 발생한 사건에 접근할 수 있는 유가족들의 힘은 분명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군 관계자들은 사건의 축소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에 더 충실하다는 인상만을 심어주고 있다.

나. 군 수사 방식 개선에 대한 제언

군대 내 사망 의혹 사건에 대해 군은 군사 보안 지역이라는 이유로 유족의 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현장 사진 촬영이나 기타 자료의 수집, 소대원 등 목격자 확인을 위한 면담 등도 상당한 통제를 받고 있다. 이에 군 내 사망 사건의 불신을 초래하는 수사 방식을 개선하고 군 수사 당국의 결과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이 군 수사 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① 군대 내 사망 사건에 대해 유족이 의혹을 제기할 경우 제3자의

조사활동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자살로 예단 하는 현재와 같은 군대내 사건 종결 방식으로는 당연히 유족의 불만을 사지 않을 수 없고 충돌과 오해가 야기 될 수밖에 없다. 재수사 요구 사건에 대해서는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민·군 합동의 기관에서, 제기되는 의혹 사항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성하여 최소한의 수사 공정성 및 유족의 의혹을 규명해 주어야 한다.

② 모든 기록은 수사결과 발표 후 공개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군대내 사망사고의 경우 유족들은 군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난 후 의문점을 제기할 어떠한 자료도 제공받지 못하였다. 의문점을 제기하는 유족들에게는 수사와 관련한 모든 기록을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 기록을 공개한다는 것은 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대한 당당함일 수 있다. 자료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의혹들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군 수사기관이 가지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군 수사기관은 조사된 자료의 공개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군 내 사망자(자살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군대내 자살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병역이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국방의 의무이기에 반드시 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자살자에 대한 인식은 아주 저급한 수준이다. 군내 자살자들이 폭행 등 타의에 의한 원인으로 인해 자살로 판명될 경우 추모비 건립, 위령소 설치 등을 검토하는 것

도 방법이다.

④ 군 내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 1차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헌병대가 얼마만큼의 법의학적 지식을 가졌는지 의심스럽다. 그 동안의 수사결과를 접하면서 유족들이 제기하는 의문점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자살이니 믿어달라는 식의 방식으로 유족들의 의혹을 증폭시킬 뿐이다.

⑤ 군 수사당국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군이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가까운 존재로 다가서는 것은 유족을 귀찮은 존재, 시비를 거는 집단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유족들은 사망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군은 이러한 의혹을 풀어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

8. 결 론

여기에 제시한 개선 방안은 군 수사당국에 대한 불신을 느끼는 유족들의 최소한의 요구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유족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그 동안 군이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던 부정적 이미지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기 반성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군 당국이 진정으로 유족들의 아픔을 같이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때 유족들 또한 군 수사 당국의 발표가 자살일지라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군대내 사망사고 처리의 개선방향

발제2. 이덕우 변호사 (김훈중위 사망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위 위원장)

1. 사망사건 발생시 처리의 일반과정

사망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하는가 하면 이른바 천수를 누리고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사망의 원인은 크게 자연사와 사고사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사고사에는 우연한 사고사와 자신의 의지로 자신을 죽이는 자살, 그리고 타인에 의하여 생명을 잃는 타살이 있다. 따라서 사람이 죽은 경우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의 문제요 이 세상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사람이 사망하면 일정한 절차를 밟아 사망 원인을 따지게 된다. 노환이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를 받아야 장례를 치를 수 있고 호적도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사가 아닌 경우에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게 된다. 즉 변사자로 보고된 경우 담당 검사가 현장을 확인하고 의사에게 검시토록 하여 일단 사인을 밝히도록 한다. 그리고 교통사고나 익사 등으로 그 사인이 명백한 경우 부검을 하지 않고 유족의 뜻에 따라 검시만으로 사인을 규명하고 사체를 유족들에게 인도한다. 물론 교통사고 등 누군가 과실로 사람을 죽인 경우 그에 대한 수사에 따라 처벌을 하게 된다. 그런데 사인이 명백치 않을 경우 부검은 필수적이며 부검 결과에 따라 자,타살 여부를 가리게 된다. 물론 부검의의 소견만이 아니라 사망자의 건강, 주변관계 등 인적사항은 물론 현장 상황 등에 대한 내사결과를 종합하여 자,타살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사망원인
↓
사망원인 규명
↓
사체처리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망사건의 처리과정은 군 내부라 해서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유독 군 내부의 처리과정에 대하여는 줄곧 유족의 강한 의혹과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그 핵심은 살인 또는 과실치사 사건인데 자살로 은폐, 조작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사망사건 처리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많은 논의가 있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생략하고 핵심적인 개선방안에 국한하여 문제제기를 하기로 한다.

2. 군 사망 사건 처리에 대한 개선방안

가. 군검찰권 독립
근본적인 문제점은 군검찰권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으로 보인다.

즉 종래 일반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지 못하여 정치권에 의하여 검찰권이 행사된다는 비난을 받았던 것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일반 검찰권을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고 일부 개선방안이 도입되기도 하였다. 법무부 장관을 원총장치로 하고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도입한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검찰위원회 설치 등이 도입되지 못하고 있고 검사동일체의 원칙 등이 폐기되지 못하고 있어 완전한 검찰권의 독립

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일반 검찰에 비하여 군 검찰의 경우는 더욱 열악하다. 즉 현행 군 검찰권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원법을 보면 명확히 드러난다. 군사법원법상 국방부 장관은 군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찰관을 지휘·감독한다고 되어 있고(제38조), 각군 참모총장 및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소속 검찰관을 지휘·감독한다고 되어 있다(제39조, 40조). 따라서 참모총장으로부터 사단장까지 검찰권 행사에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는 군 검찰의 특수성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제도라는 입장과 군 검찰과 일반 검찰과 마찬가지로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되어 있다. 그 밑바닥에는 군 검찰의 존립근거라 할 수 있는 군 지휘권의 확보와 장병들의 인권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적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둘 것인가에 대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논의한 적은 없는 것 같다. 구체적으로 군 형법과의 관계를 보면 군의 유지와 지휘권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군 검찰권에 대한 지휘관의 지휘·감독권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군 검찰권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할 경우 군 지휘권의 훼손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현재 군형법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평시에 한하여 군 검찰과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검찰과 법원에 관할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절충적인 의견도 있다. 즉 절도, 폭행, 과실치사, 살인 등의 수많은 일반 범죄의 경우 군 검찰이 아닌 일반검찰로 하여금 수사하고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폐쇄된 군 조직내에서 수사를 하고 재판

을 함으로써 빚어지는 부작용과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나. 단기적인 과제
현행 제도를 고친다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연구한 후에 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일단 현행 제도하에서도 군대내 사망사고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 방안 중의 하나로 사망사고와 같은 특수한 경우 군 검찰과 일반 검찰의 합동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변사보고 즉시 일반 검찰과 함께 검시 및 현장 감식 등 초동 수사에서부터 일반 검찰과 함께 수사를 하도록 하면 상당한 개선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항상 문제가 되어 왔고 가장 중요하게 지적되어 온 것이 군의문사 사건의 경우 초동 수사부터 자살로 예단하고 그에 끼워 맞추느라 현장 보존조치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일반 검찰의 개입을 의무화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장기적인 과제
위와 같은 방안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는 남아있다. 즉 관할권이 군사법원과 군 검찰에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의 처리에 대한 지휘관이나 국방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이 인정되고 부당한 외압이 들어올 여지가 있는 것이다. 물론 일반 검찰이 개입하였으므로 이러한 가능성을 상당히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나 제도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군형법과 군사 법원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작업이 필요하다. 위에서 살핀 군사 법원법상 군 검찰에 대한 지휘 감독권, 군

형법상의 범죄가 아닌 일반 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 등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연구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망사건의 경우 재정신청 대상 범죄로 한다는 등 재정신청제의 확대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 또는 특검제의 도입

그러나 위와 같은 개선 방안은 현재까지 제기되어 온 군의문사의 해결을 위한 것은 아니다. 즉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수많은 의문사 사건에 대하여는 현재의 군검찰 또는 민관 합동수사체제로는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독립된 특별검사로 하여금 재수사를 하도록 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이는 근본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 등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고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특별법이라도 제정하여 군의문사 문제만을 전담하는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폭력적인 군대문화와 폐쇄성이라는 군 조직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의문사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제기되어 온 수많은 의문사에 대하여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나 특별검사로 하여금 재수사를 하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아울러 군 검찰의 독립 문제와 관할권에 대하여 지금부터라도 심도있는 논의와 연구를 시작하여야 한다. 그리고 향후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선량한 장병들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군형법과 군사법원

법에 대한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이 사건에 관하여,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내 최전방 관측소인 242GP(OP. 올렛)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상태로 12시 25분경 (군당국 발표시각) 방00일병에 의해 발견됨

· 사건 개요

1998년 2월 2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내 최전방 관측소인 242GP(OP. 올렛)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상태로 12시 25분경 (군당국 발표시각) 방00일병에 의해 발견됨

· 군측 입장

사건 장소는 외부의 침입이 불가능하고 유류품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 등 타살의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고, 업무능력 부족에 따른 무력감과 소외감을 느끼던 중 자살을 미화하는 내용의 소설을 읽고 자살을 결심하고 자살함.

· 유가족 입장

(국방부 특조단에 제기한 122개의 의혹사항 중 일부 수록)

- 사건 현장의 철모의 주인과 크레모아 박스 파손

국방부는 미군의관의 철모라고 하였으나 전역병 등의 진술 등을 보았을 때 미군의관의 철모가 아닌 제 3자의 철모일 수 있다. 현재 미군측은 필름 원판을 제출하고 있지 않음.

사례1) 故김훈 중위

· 사건 개요

1998년 2월 2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내 최전방 관측소인 242GP(OP. 올렛)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상태로 12시 25분경 (군당국 발표시각) 방00일병에 의해 발견됨

· 군측 입장

사건 장소는 외부의 침입이 불가능하고 유류품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 등 타살의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고, 업무능력 부족에 따른 무력감과 소외감을 느끼던 중 자살을 미화하는 내용의 소설을 읽고 자살을 결심하고 자살함.

· 유가족 입장

(국방부 특조단에 제기한 122개의 의혹사항 중 일부 수록)

- 사건 현장의 철모의 주인과 크레모아 박스 파손

국방부는 미군의관의 철모라고 하였으나 전역병 등의 진술 등을 보았을 때 미군의관의 철모가 아닌 제 3자의 철모일 수 있다. 현재 미군측은 필름 원판을 제출하고 있지 않음.

- 군은 총성을 아무도 듣지 못했다고 했으나 실험결과 또렷이 들렸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일지는 유독 사건 발생 당일 것만 누락되었다?

- 사건 발생 2시간만에 자살로 보고하고 언론에 발표하였으며, 수사 과정에서 조작·은폐의혹이 있다.

사례2) 故 윤광열 소위 (A21) 1999년 12월 4일, BOQ 보일러실에서 온수탱크에 등을 기대고 앉은 자세로 목에서 휘어진 보일러 관까지 야상끈에 의해 목이 매어져 있는 것을 16시16분경에 대대 인사 장교가 최초 발견함.(군측 발표)
· 군측 입장
타살의 흔적을 찾을 수 없고, 내성적 성격에 업무와 군 생활에 대한 부담감과 내무검사시 부소대장의 언행으로부터 자존심이 상하여 충동적으로 자살함.

· 유가족측 입장
- 자살동기가 없다. 자존심이 상한다고 자살한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으며 부대 전입 4일만에 군 생활에 대한 부담이 자살 동기가 된다는 것이 납득이 안됨.
- 전입 4일차인데 부대내의 갈등관계(소대장 길들이기등) 문제는 없었는가?
- 사건 현장 훼손등 초동수사가 미흡하며 군측이 유가족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는 등 유가족을 박대하여 감정대립을 불러일으킴.

사례3) 故 이혁기 일병
· 사건 개요
1999년 11월 3일 08시 30분경 동부전선 초소에서 이혁기 일병이 김00

상병과 함께 초소 철책 경계근무 중 총기 사고로 사망한 사건.

· 군측 입장
내성적 성격과 겨울철 경계근무에 대한 부담감, 선임병의 잦은 질책 등으로 향후 군 생활에 대한 두려움등으로 자살을 결심하고 K-2소총으로 이마에 대고 격발하여 현장 사망함.

· 유가족측 입장
- 자살동기가 없다. 집안, 여자관계에 자살동기가 전혀 없으려 모범사병으로 수 차례 추천되는 등 군 생활도 문제가 없었음. 특히 사고당일에 세례를 받기로 한 날이었는데 자살하였겠는가?
- 사망자의 앞니 1개가 빠져 있었으나 부검의 소견서에도 언급되지 않았고, 수사에서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은폐의 의혹이 있다.
- 수사관이 철저히 수사를 한다고 유가족과 약속하고서, 사고일 다음날 자살로 사망확인조서를 작성하고 있다가 추후에 유가족에게 발각됨.

사례4) 김대성 이병
· 사건 개요
1999년 12월 3일(금) 09시45분경 연천군 000고지 증가초소 진지에서 사단전투지휘 검열 훈련중 교통호에서 이마에 총창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중 사망

· 군측 입장
주변 정황으로 보아 타살의 혐의점이 없고, 군 생활에 대한 부담감으로 자살함.

· 유가족측 입장

- 자살동기가 없다. 군측에서도 교우관계, 이성관계, 성격등은 특이한 내용이 없다라고 하였는데 타살, 사고사, 자살에 상관없이 사고 원인이 부대내에 있을 것인데, 부대내에서의 문제에 대한 해명이 없음.

- 40여일의 사단 조사에서도 나오지 않는 화장실 낙서장(죽고싶다)의 낙서가 그 이후 군단 재조사에서 발표되었는데 이는 자살동기를 억지로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 함께 근무하던 고참병이 자신의 총기를 사고자가 가져갔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납득이 안된다.

사례5) 故이지명 하사

· 사건개요
1999년 9월13일 오전 11시30분경, 논산 훈련소 사격훈련장 야외 화장실 뒷편에서 총창에 의해 머리에서 피를 흘린 채 사망하여 있는 것을 소속 부대원 박00병장이 발견한 사건임.

· 군측 입장

고인의 업무일자에 나타난 비관적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 사고당일 고인의 행동이 평소와 달랐으며 부검 결과 근접사로 밝혀짐에 따라 자살이라고 판단.

· 유가족측 입장

- 군은 부대원의 진술에 의해 타살혐의 없음을 주장하지만 1차,2차,3차·현장재현에서 진술한 내용을 볼때 진술내용이 많이 번복되거나 상반되어 신뢰성을 가지지 못한다. (예: 박00중사는 사고자의 누나에

게 전화를 걸어 메시지를 남겨 놓았다고 하였으나 사고자 누나의 핸드폰은 메시지 기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 사입구의 상처의 정도로 보았을 때 수cm 이상에서 발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총신이 97cm에 달하는 소총이 머리에 대지 않고 발사되었다는 것은 자살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다.

- 부대 지휘관의 유가족에 대한 폭언과 박대는 군수사 자체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게 한다.

사례6) 故허원근 (80년대 의문사)

· 사건 개요: 1984년 4월 2일, 전방 GOP부대 중대장 전령병을 하던 사고자는 유류고 뒤에서 총을 가슴좌우측에 각 1발씩, 두부에 1발 등 세발을 맞고 죽은 모습으로 발견되었다. 군은 자살이라고 결론 지음

· 의문 사항

M16 세발을 그것도 단발로 세번씩이나 쏘아서 자살을 할 수는 없고, 사건 직후 중대장이 세번이나 총성 청취시간을 정정하여 교육을 시켰고, 총성은 두번 밖에 나지 않았다고 하는 점, 탄피의 수가 틀리고, 중대장의 총에 대한 화약검출 실험만을 제외시킨 점, 또한 동지는 다음날 첫 휴가를 나가기로 되어 있던 점 등은 자살이라는 군당국의 발표를 믿지 못하게 한다.

사례7) 故김두황(80년대 의문사)

· 사건개요: 1983년6월18일 보안사의 '녹화사업' 도중 두부가 없어진 참혹한 모습으로 발견됨.

· 의문점: 83년 3월 8일 성북경찰서에 학생운동과 관련하여 연행되었고, 그날 바로 입대하였다. 그리고 세달여 후 6월 18일 두부가 없어진

